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	-----

발의연월일 : 2014. 11. .

발 의 자 : 박승희·임정빈·김정현·
장현근·공병건·박영애·
안영수·이한구·황홍구·
조계자 의원
(찬성자 6인)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의 증가가 가져올 의료비 부담의 감소와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인건강증진 사업 종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노인건강증진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붙임

가.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발췌(부분발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연령대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5. 노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6조(경로식당 지원) 시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연대활동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노인건강증진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3. 시민들의 참여와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노인건강체전 및 위원회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에서 수행하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으로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유지상